

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형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4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11월 2일

발 의 자 : 문형주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구현, 김기만, 김창원, 김현아,  
김혜련, 서윤기, 서영진, 성백진,  
오승록, 이상목, 이성희, 이순자,  
이행자, 이혜경, 장우윤, 장홍순,  
장인홍, 조규영 의원 (18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는 대관 취소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고, 같은 법 시행령은 미술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조례로 정할 수 없음에도

현행 조례는 대관 취소자에게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를 준용하여 소장작품을 관리하고, 대관허가 취소 시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러한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아 미술관 시설을 대관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규정이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미술관이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대관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5조).
- 시장이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·정지시킬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시장이 지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8조).
- 소장작품 관리에 관하여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23조).
-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36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  
비용추계 비대상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대관허가 제한) 시장은 미술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대관 심의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어느 하나의 경우에”를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후단을 삭제한다.

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 관장은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,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
2. 시민큐레이터 운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대관허가 제한) 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관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전시실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제18조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</u></p> <p>2. <u>위원회의 대관 심의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	<p>제15조(대관허가 제한) <u>시장은 미술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대관 심의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&lt;삭제&gt;</p> <p>2. &lt;삭제&gt;</p>
<p>제18조(대관허가의 취소) 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·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제18조(대관허가의 취소) 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·정지시킬 수 있다. &lt;삭제&gt;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소장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)            ① ~ ③ (생략)            ④ <u>소장작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23조(소장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)           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④ <u>&lt;삭제&gt;</u>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 관장은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,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</u></li> <li>2. <u>시민큐레이터 운영</u></li> </ol>

#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.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체계의 모순을 바로잡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재정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 없음.

#### 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문형주